

한발교육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265 |
|----------|-----|

제출년월일 : 2007. 11. 2.

제출자 : 대전광역시교육감

1. 제안 이유

- 가. 대전교육 최고의 교육상으로서 그 권위와 영예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상 명칭 변경
- 나. 포괄적으로 구분하고 있는 시상부문을 학교급별·영역별로 구분하고, 「평생 교육·교육 독지가 부문」을 신설하여 교육독지가를 적극 발굴·포상하고자 함
- 다. 수상인원을 부문별로 선정하되 부문별 해당자가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명기 함
- 라. 위원회 간사를 담당장학관 또는 사무관으로 변경 하여 업무조정 등에 따른 업무담당자가 간사를 맡도록 함

2. 주요 내용

- 가. 교육상명칭 한발교육상을 한발교육대상으로 명칭 변경(조례안 각조)
- 나. 시상부문 1. 초·중등교육부문(유아·특수교육부문포함)을 1. 유아·특수 교육 부문 2. 초등교육 부문 3. 중등교육 부문으로 구분하고, 체육 교육 부문을 예·체능교육 부문으로 변경하며, 평생교육과 교육발전에 기여한 교육독지가를 적극 발굴하기 위하여 평생교육·교육 독지가 부문을 신설하려는 것임(조례안 제3조1항)
- 다. 교육상의 수상자는 제1항의 부문별로 선정하되 연 6인 이내로 한다. 를 교육대상의 수상자는 제1항의 부문별로 선정하되 6인 이내로 한다. 다만 부문별 해당자가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로 내용 명기(조례안제 3조2항)
- 라.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대전광역시교육청 초등교육과 인사 담당장학관이 된다는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로 변경(조례안 제8조)

3. 참고 사항

-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나. 입법예고 : 제출된 의견 없음
- 다. 부패영향평가 : 적정

대전광역시 조례 제 호

한발교육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한발교육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한발교육상조례"를 "한발교육대상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한발교육상"을 "한발교육대상"으로 한다.

제2조 중 "한발교육상"을 "한발교육대상"으로, "교육상"을 "교육대상"으로 한다.

제3조 제1항 중 "교육상"을 "교육대상"으로 하고,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상"을 "교육대상"으로 한다.

1. 유아·특수교육 부문
2. 초등교육 부문
3. 중등교육 부문
4. 예·체능교육 부문
5. 교육행정 부문
6. 평생교육·교육 독지가 부문

제3조 제2항중 아래 내용을 추가 명기한다

"다만 부문별로 해당자가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5조 및 제6조 중 "교육상"을 각각 "교육대상"으로 한다.

제7조 중 "교육상"을 "교육대상"으로 하고, "한발교육상"을 "한발교육대상"으로 한다.

제8조 중 "초등교육과 인사담당장학관"을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명 : <u>한발교육상조례</u></p> <p>제1조(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감이 행하는 <u>한발교육상</u>의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수상자의 요건)<u>한발교육상</u>(이하 "<u>교육상</u>"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교육시책 구현이나 교육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공적이 탁월하게 인정되는 자에게 수여한다.</p> <p>제3조(시상부문 및 인원)①<u>교육상</u>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초·중등교육 부문(유아·특수교육 부문 포함)</u> 2. <u>체육교육 부문</u> 3. <u>교육행정 부문</u> <p>②<u>교육상</u>의 수상자는 제1항의 부문별로 선정하되 연 6인 이내로 한다.</p> | <p>제명 : <u>한발교육대상조례</u></p> <p>제1조(목적)<u>한발교육대상</u>.....</p> <p>제2조(수상자의 요건)<u>한발교육대상</u>(..... <u>교육대상</u>.....).....</p> <p>제3조(시상부문 및 인원)①<u>교육대상</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유아·특수교육 부문</u> 2. <u>초등교육 부문</u> 3. <u>중등교육 부문</u> 4. <u>예·체능교육 부문</u> 5. <u>교육행정 부문</u> 6. <u>평생교육·교육독지가 부문</u> <p>②<u>교육대상</u>..... 다만, 부문별 해당자가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p> |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5조(시상시기)<u>교육상</u>은 연1회 시상하 되 그 시기는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p> | <p>제5조(시상시기)<u>교육대상</u>은.....</p> |
| <p>제6조(수상후보자 추천)<u>교육상</u> 수상 후 보자의 추천에 관하여는 교육규칙으 로 정한다.</p> | <p>제6조(수상후보자 추천)<u>교육대상</u></p> |
| <p>제7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①<u>교 육상</u> 수상 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u>한밭교육상</u>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 ⑦(생략)</p> | <p>제7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①<u>교 육대상</u>.....<u>한밭교육대상</u>..... ② ~ ⑦(현행과 같음)</p> |
| <p>제8조(간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대전광역시교육청 <u>초등교육과 인사담당장학관</u>이 된다.</p> | <p>제8조(간사).....<u>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u>.....</p> |

한밭교육상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7. 11. 26

교육사회위원회

I.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11. 2 대전광역시교육감

나. 회 부 일 자 : 2007. 11. 5

다. 상 정 일 자 : 제17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2007. 11. 26)
상정, 질의, 심사, 원안가결

II.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교육국장 강진수)

1. 제안이유

한밭교육상의 명칭을 변경하여 권위와 영예성을 높이고 포괄적으로 구분하고 있는 시상부문을 학교급별·영역별로 구분하고 신설하는 등 관련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 함.

2. 주요내용

가. “한밭교육상”과 “교육상”을 “한밭교육대상”과 “교육대상”으로 명칭변경(안 제1조 내지 제3조, 안 제5조 내지 제7조)

나. 시상부문을 3개 부문에서 6개 부문으로 확대함(안 제3조제1항).

다. 부문별 해당자가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함(안 제3조제2항)

III. 검토의견 (전문위원 : 안문환)

본 개정 조례안은 “한밭교육상”의 명칭을 “한밭교육대상”으로 변경하여 한밭교육대상이 대전교육 최고의 교육상으로서의 권위와 영예성을 높이는 동시에, 포괄적으로 구분하고 있는 시상부문을 세분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 조례 제명을 “한밭교육상조례”에서 “한밭교육대상조례”로 하고,
- 제1조는 “한밭교육상”을 “한밭교육대상”으로,
- 제3조 제1항은 “초·중등교육부문(유아·특수교육부문포함)”을 “유아특수 교육 부문”과 “초등교육 부문”, “중등교육 부문”으로 세분화 하였으며, “체육교육부문”은 “예·체능교육 부문”으로 하고, “평생교육·교육 독지가 부문”을 신설함.
- 제3조 제2항은 “부문별 해당자가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단서 규정을 신설함.
- 제8조는 간사를 “초등교육과 인사담당장학관”에서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으로 개정함.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한밭교육상의 권위와 영예성을 높이고자 조례의 제명과 교육상의 명칭 변경, 시상부문을 학교급별·영역별의 세밀한 구분, 평생교육과 교육발전에 기여한 독지가를 적극 발굴·시상하기 위한 평생교육·교육 독지가 부문 신설 등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IV. 질 의 요 지 : 생 략

V.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V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